

화학물질 관리정책 방향

- 발암성 물질 중심으로 -

2015. 7. 7.



고용노동부

손우성 사무관



순서

I

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

II

정책 성과와 과제

III

향후 정책 추진 방향

I

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

- 1 개 요
- 2 유해성 물질 보건관리
- 3 위험성 물질 안전관리
- 4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및 경고표시

1. 개 요

- ▶ [국내 현황] 약 4만 3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 · 사용되며,
매년 4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· 수입
- ▶ [산업안전보건법상 분류 및 관리] ① 유해성 물질(질병 등 건강장애 유발물질)
② 위험성 물질(화재 · 폭발 등 사고위험 물질)
③ MSDS 및 경고표시 대상물질

기존 화학물질 (43,000여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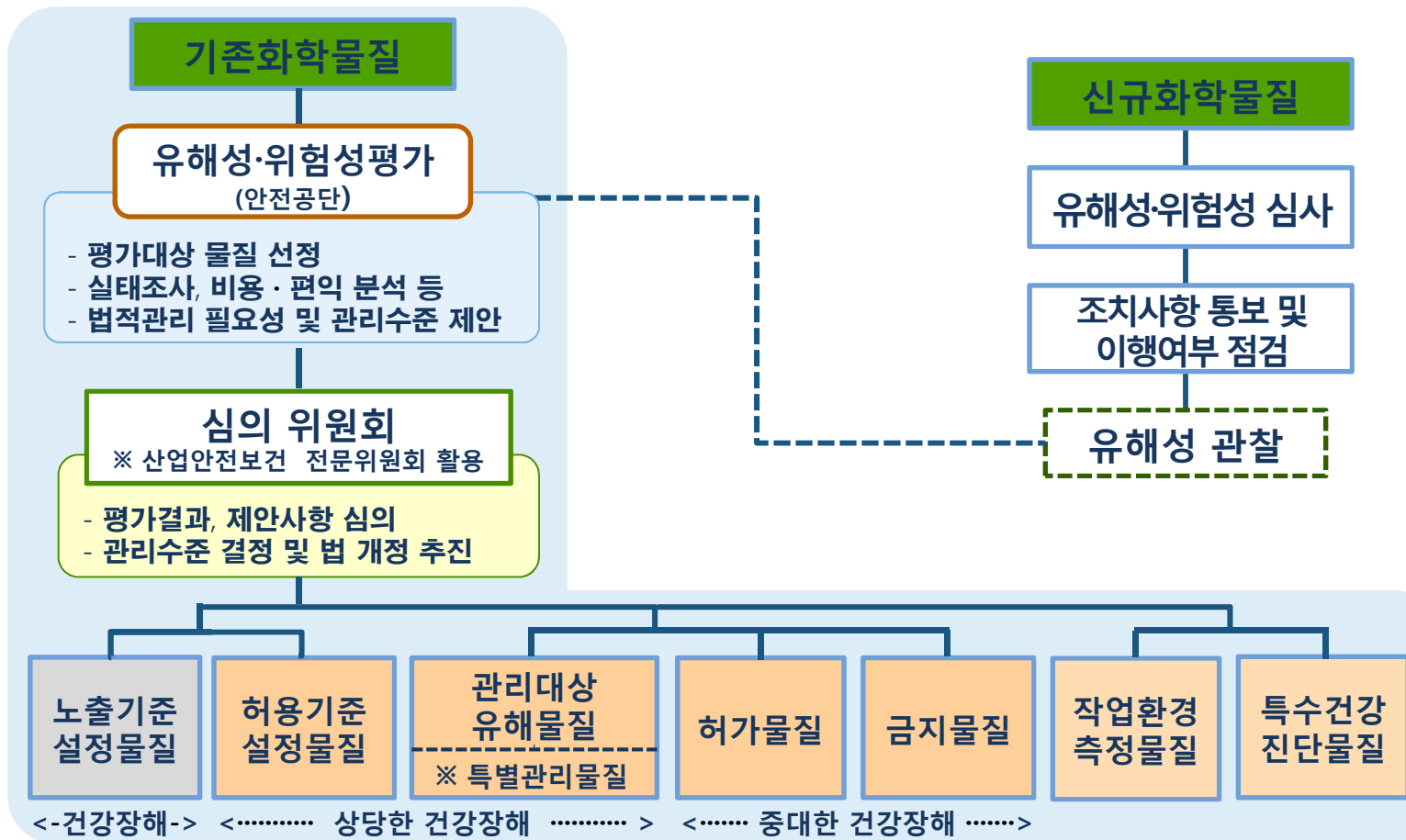
- ▶ 유해성 물질(750여종) 보건관리
 - 금지 · 허가물질 등 지정 및 보건조치
- ▶ 위험성 물질(7개 물질류) 안전관리
 - 안전조치,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(51종)
- ▶ MSDS·경고표시 작성·제공
 - 유해성·위험성 기준(28개) 해당물질

심사, 감독 등

신규
화학물질
[수입·제조]
(연간 400여종)

2. 유해성 물질 보건관리

➤ [분류 절차] '유해성·위험성 평가' 결과에 따라 **8개**로 분류(편입·재편 여부 등)



2. 유해성 물질 보건관리

➤ [분류기준 및 현황] 분류기준별 제조·사용 시 **금지물질** 등으로 지정하고 **보건조치 기준** 등을 규정

구분	분류 기준	관리 방법
제조금지물질	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물질	제조·수입·사용 등 원천적 금지 ※ 시험·연구 목적 시 승인
허가대상물질	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가 있고 대체물질 미개발 또는 금지시 산업에 큰 영향 우려 물질	설비·작업방법 등 허가 후 제조·사용 유해인사발 달성주기(0~24개월)
허용기준 설정물질	발암성 등 고독성 물질 또는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물질	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 * 노출기준상 노출농도와 동일 작업 안전, 근로시간 준수
특별관리물질	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·생식 세포 변이원성·생식독성 함유 물질	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보건 조치+그 외 추가조치* 준수 * 취급일지 작성, 유해성 고지 등
관리대상 유해물질	보건조치가 필요한 상당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유해성 물질	'안전보건규칙'상 보건조치* * 작업장 설비, 작업방법, 보호구 등
노출기준 설정물질	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한 물질	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노출 기준* 이하로 유지(권고사항) * 노출시 근로자 건강상 유해 하지 아니한 기준

건강해
위험
증가

3. 위험성 물질 안전관리

➤ (1) 위험물질

- [분류] 폭발성·인화성 등 **물리적 위험성**을 보유한 **7개 물질(류)**

①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, ②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, ③산화성 액체·고체, ④인화성 액체, ⑤인화성 가스, ⑥부식성 물질, ⑦급성독성 물질

- [관리] 취급시 **작업방법, 작업환경, 보호구 등 산안법상 안전조치 규정 준수**

➤ (2) PSM 대상물질

- [분류] **중대산업사고** 예방을 위하여 취급설비에 대한 **공정안전관리(PSM)**가 필요한 물질(51종)

- [관리] **위험물질(51종) 취급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***의 제출, 심사, 평가

* 공정안전자료, 공정위험성 평가서, 안전운전·비상조치계획 등이 기재된 자료

4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및 경고표시

- [관리] 산안법상 **유해성·위험성 기준***(28개)에 해당하는 물질(혼합물 포함)은 **MSDS 및 경고표시**를 작성·제공토록 규정

* 폭발성 등 '물리적 위험성(16개)', 발암성 등 '건강·환경 유해성질(12개)'

- 화학물질 양도·제공 시 MSDS 및 경고표시를 **함께 양도·제공**
-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**게시·비치**
-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 배치 시,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**교육 실시**
-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**경고표시**

* [(MSDS)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(유해성·위험성, 응급조치 요령, 취급방법 등 16개 항목)가 기재된 자료로서 사업장 내 게시·비치

* [(경고표시)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(명칭, 그림문자, 유해·위험문구 등 6개 항목)가 표시된 자료로서 용기 및 포장에 부착

명 칭
위험/경고

유해위험문구 :
인화성가스 흡입하면 치명적인
암을 일으킬 수 있음

예방조치문구 :
•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
• 보호장갑·보안경을 착용하시오
•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
•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하시오
•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
•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
옮기시오
•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

공급자정보 : ○○화학, 000-0000-0000



Ⅱ 정책 성과와 과제

1 발암성 물질 관리정책 성과

2 향후 추진과제

발암성 물질 관리정책 성과

발암성 물질의 분류체계 개선

- ▶ 노출기준 고시상 발암성 물질
분류 · 표시체계 개선('11.3.2)
* ACGIH기준[A1,A2] → GHS기준[1A,1B,2]

유해성 ·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

- ▶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, 유해성 ·
위험성 평가 등의 체계적 수행을
위한 세부규정 마련('11.3.2)
*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(예규)

유해성 정보 제공 확대

- ▶ 발암성 정보 제공 대상 확대('12.3.26)
* 58종 → 184종(노출기준 고시)
- ▶ 생식세포 변이원성 · 생식독성
정보 추가

특별관리물질 지정 · 관리

- ▶ 특별관리물질 신설
[발암성 물질 9종 지정, '12.3.5]
* '관리대상 유해물질'의 보건조치에 취급
일지 작성, 유해성물질 고지 의무 등 추가
- ▶ 고위험 물질 7종 추가('13.3.21)
* 특별관리물질 확대(9종 → 16종)

향후 추진과제

발암성 물질

법적 관리물질 지정

비규제 화학물질

유해성 · 위험성 평가

미확인 화학물질

발암성 시험

규제 화학물질

규제수준 적정성 검토
취급사업장 관리 강화

발암성 물질의 관리 체계화

Ⅲ 향후 정책 추진 방향

● 발암성 물질 관리 강화

발암성 물질 관리 강화

법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확대 추진

- 고위험물질(발암성 등)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
특별관리물질,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확대
-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허용기준(노출농도) 강화 등

유해성 ·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추진

- 평가대상 선정, 규제수준 변경 필요성 및 기준 마련, 절차 보완 등
- 만성흡입독성·발암성 평가 체계 구축

취급사업장 관리 강화

- 특별관리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 · 점검 및 교육 · 홍보 추진
- '허용기준 설정물질' 취급사업장 허용기준 준수실태 감독 추진



감사합니다